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357 제출연월일: 2024. 7. 2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·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'건설비용 부담금'을 폐지하고,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)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,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(종 전의 제4호) 중 "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"을 "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분담하는"으로, "부담하게"를 "분담하게"로 한다.

제20조의3제1항 중 "제18조"를 "제16조의2"로, "부담하게"를 "분담하게" 로, "부담한"을 "분담한"으로, "부담함"을 "분담함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

18조에 따라 부과된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공급시설 건설비용의
	분담)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
	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
	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
	<u>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
	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
	정기준,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
	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
	<u>으로 정한다.</u>
제18조(건설비용의 부담금) ① 사	<u><삭 제></u>
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	
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	
부담하게 할 수 있다.	
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	
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	
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	
<u>로 한다.</u>	
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	
산정기준, 부과·징수방법 등에	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	
으로 정한다.	
제20조(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)	제20조(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)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	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(생략)
- 4.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
 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
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
 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
 담하게 할 때

5. · 6. (생략)

제20조의3(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) ① 제18조에 따라 공급시 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 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(「법인세 법」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 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 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취득한 공 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 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3.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
분담하는
<u>분</u>
담하게
5. • 6. (현행과 같음)
제20조의3(공급시설 건설비용의
적립) ① <u>제16조의2</u>
<u>분담하게</u>
<u>분담한</u>
<u>분</u> 담
<u>함</u>

[별지 제1호서식]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	!번	조•항(조제목)	주요내용
	1	제20조(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분담금을 분담하게 할 때 개선을 명할 수 있음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	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	1	제20조(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)	제3호 :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분담금을 분담하게 할 때 개 선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기술적 추계 불가

2. 상세 사유

- 제20조(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)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분담금을 분담하게 할 때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고
- 공급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체계에서 해당 사안도 발생하지 않을뿐더러, 해당 사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비용 지출에 대하여 기술적 추계는 불가

Ⅲ. 부대의견

O 해당 없음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•국장
	박만희	박상희	이옥헌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만희	044-203-3928	rika3@korea.kr